

##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해운대구	심의일자	2023-09-08
건축종별	[ ] 신축, [ ] 증축, [x] 대수선, [ 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해운대구청장	*여러 명인 경우 ○○○외 ○명으로 적습니다	
대지현황	대지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반송제1동		
	지번 683 - 48	관련지번 0	
	대지면적 5590 m <sup>2</sup>	용도지역(지구,지역) 도시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1174.55 m <sup>2</sup>	건폐율 21.0116 %	층수 지하: 1 층/지상: 3 층
	주용도 운동시설	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동
	최고높이 26.3 m	용적률 55.031127 %	연면적 합계 4163.08 m <sup>2</sup>

	구분	주요 심의결과
심의내용	( 종합 )분야	<p>☐ 심의조건</p> <p>【구조】 손철호위원(원안의결) (권장사항) 지붕만 철거하는 단순한 공사로서, 해체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공사 시 작업자 및 인접건물의 안전에 유의하여 공사하기 바람.</p> <p>【안전】 No 1.~5. 정철호 위원 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</p> <p>1. p7. 공사의 개요에 해체공사금액 기록 요함.</p> <p>2. p42. 3.2 해체대상 건축물조사에 단면도작성 누락</p> <p>3. p.88~p.93 8.2 가시설물(비계) 시공상세도에 작업자동선을 표시하여 현장 사항에 맞게 상세히 재작성요함(가시설물 설치 시공순서도는 시스템동바리로 표시되어 있고, 가시설물 상세도는 강관비계로 시공순서도와 상이함)</p> <p>4. p103 9.2 대상건축물 해체순서 내용중 평면도, 단면도 상세도에 해체작업자 의견 반영하여 재작성 요함</p> <p>5. p148 11.4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계획 산소절단기 사용시 화재예방대책, 작업자 추락방지대책, 크레인 인양시 안전대책 등 해체 작업시 유해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재작성 요함</p> <p>※ 해체 대상이 특수구조물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확인 요함</p> <p>※ 권장사항</p> <p>- 해체대상은 특수구조물로 화재 및 근로자 추락위험요인이 높으므로 해체순서에 맞게 위험요인별 안전대책(가시설물 설치, 해체, 인양, 반출)을 상세히 재작성 후 해체계획서 작성자 검토 후 보완사항 제출 요함.</p> <p>【환경】 No 1.~2. 김정권 위원 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</p> <p>1. 소음대책에 대한 내용은 없이 그냥 주간 665dB로 진행한다는 말은 근거가 없음</p> <p>2. 해체시 발생폐기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활용 가능 부분에 대한 기술이 필요</p>

	구분	주요 심의결과
심의내용	( 종합 )분야	<p>▣ 일반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본 심의는 해체계획에 대한 검토 심의이며 관련 법령 적합여부는 해체허가 신청 시 별도 검토하여 적합하게 계획하고 신청되어야 합니다.</li> <li>2. 해체허가 신청도서는 해체 심의도서와 일치하고, 상기 조건사항을 반영하며,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3. 해체심의 시 부여받은 위원별 심의 의견(조건)은 해체허가 접수 전 관련 조치계획에 대해 해당 위원의 확인을 득한 후, 해체허가 시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4. 주요 해체공법, 계획 상 변경이 발생할 경우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분야 심의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</li> <li>5. 심의 후 후속행정절차(건축물해체허가, 감리자지정, 착공신고) 진행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.</li> </ol>

심의결과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input type="checkbox"/> 원안 의결                       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조건부 의결                        <input type="checkbox"/> 재검토 의결                        <input type="checkbox"/> 부결                 </p> 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</li> <li>• 조건부 의결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</li> <li>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</li> <li>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)</li> </ul>
------	---